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3.12.20.(수) 10:00 < 12.20.(수) 석간 > 배포 2023. 12. 19.(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과 양형기준 개선 강조

- 장관, 올해 7번째이자 마지막 산업기술보호위원회(47회) 주재
-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위해 산업기술보호법의 조속한 개정, 양형기준의 개선 등이 중요함을 강조
-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법정계획)을 2024년 내 수립·시행예정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은 12.20.(수)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출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조속히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고, 양형기준도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회의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2024년 중으로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동 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실행 가능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안보 강화, 기술패권경쟁, 신흥기술의 출현 등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술보호체계와 제도, 그리고 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실태조사 확대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정례 추진 △기술안보포럼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현장밀착형 정책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 기술안보포럼 : 기술보호제도, 국제동향 등 실무 현장의 구체적 제도와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논의하는 정책포럼 ('22.10~)

한편, 이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의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수출 및 해외 인수합병(M&A) 승인이 있었다.

담당 부서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책임자	과 장	최성준 (044-203-4850)
		담당자	주무관	조복환 (044-203-485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보호위 개요 및 안건내용**

1 제47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요

□ (**일시 / 장소**) 12. 20(수) 09:00~10:00 / **서울**(대한상의 8층 회의실)

□ (**참석자**) **산업부 장관**(주재), 산업기술보호위원, 안건 관계자 등 약 40명

□ (**방식**) 심의안건 상정→심의→의결 및 보고안건 상정→자유토론

□ (**안건**) ❶ [보고안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동향과 향후 과제

❷ [의결안건] **총 12건** (반도체 4건, 자동차 3건, 생명공학 5건)

<세부 진행계획>

시간	진행계획	비고
09:00~09:05	▪ **개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모두발언**	언론공개
09:05~09:35	▪ **의결안건(총 12건) 상정 및 심의·의결** - 반도체 관련 안건 (1~4 호 안건) - 자동차·철도 관련 안건 (5~7호 안건) - 생명공학 안건 (8~12호 안건)	안건 소관과
09:35~09:45	▪ **보고안건 발표 및 토의**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동향 및 향후과제	기술안보과
09:45~09:55	▪ **종합토의**	참석위원 전체
09:55~10:00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마무리발언 및 폐회**	

※ 모두말씀 언론공개, 이후 비공개 전환

2 [의결안건] 국가핵심·국가첨단전략기술 수출·해외M&A 승인 [총12건]

1 (**1호~4호 : 반도체 분야**) 해외자회사 생산 및 소송대응을 위한 국가첨단전략기술자료 반출 → **수출승인**

2 (**5호~6호 : 자동차 분야**) 수소자동차 관련 旣 승인 수출대상 변경 및 해외 공동개발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반출 → **수출승인**

(**7호**) 해외 투자유치에 의한 최대주주 변경 → **조건부 해외 M&A승인**

3 (**8호~12호 : 생명공학 분야**) 특허소송 대응 및 의약품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첨단전략기술 자료 반출 → **수출승인**

3 〔보고안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동향 및 향후 과제

1 산업기술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산중위는 개정안 13건을 병합심사하여 총 21개條 60개項의 대안의결(11.30)

① (**처벌강화**) △벌칙 강화 △침해행위 확대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

- ㅇ 처벌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확대**하고, **해외유출범죄 벌금 상향**(15억원 이하→(국핵)65억원 이하, (산업)30억원 이하)
- ㅇ **기술유출 브로커**도 **처벌**할 수 있도록 **침해행위 확대**하고,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

② (**관리강화**) △보유기관 등록제 신설 △실태조사 강화 △과태료 대상 확대*

* 보유기관 미등록, 시정명령 불이행 등도 과태료 부과

③ (**심사강화**) 해외인수합병 승인 △**심사항목 추가**(국가안보 + <u>국민경제 파급효과</u>), △대상기관과 함께 **외국인**에게도 **공동신청** 의무 부여

④ (**기업지원**) 기술보호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운영 지원근거 마련** 등

2 후속 조치

① **시행령 후속 개정(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ㅇ 등록제、판정권고, **실무지원센터 설치·운영,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 등 **법 개정사항 반영**
- ㅇ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검토기간 제한 등

② **기술유출범죄 처벌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 ㅇ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 상향 추진**으로 솜방망이 처벌 양산 원인 제거
- ㅇ 기술침해 **피해액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관계부처간 협력 강화**

③ 현장중심 정책기반 조성을 위한 **현장실태조사 강화**

* 현장조사 대상 확대('22년 6개사→'24년 35개사) 및 기술보유 대학・연구기관 점검 강화

붙임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모두발언**

[인사 말씀]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첨단기술 유출의 심각성]

최근 하루가 멀다하고
기술 유출에 대한 기사가 언론을 장식합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와 같이
우리 핵심 첨단산업의 기술을 노리며,
심지어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려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쌓은 기술들이
눈 앞에서 해외로 새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경제적으로는 수십조에 이르며,
기술개발의 열정을 꺾음으로써 발생하는 추가 피해는
정확히 추산하기도 어렵습니다.

* 기술유출 피해액 : 2018~2022 약 26조원 추산(국정원)

기술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사위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그 핵심입니다.

❶범죄 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❷벌금을 현행 15억원에서
6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며,

❸손해배상 한도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로
기술유출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정부와 여야 의원님들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법입니다.

한시라도 빠른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양형기준 개선]

양형기준 개선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행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법정형 대비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 국가핵심기술 유출 처벌 : (법정형) 3년이상 징역 vs. (양형기준) 1년~3년 6개월
- 산업부는 최소 3년 6개월~5년으로 상향할 것을 제출 (3년 이하시 집행유예 가능)

수십조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단지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형량이 대폭 감경되는 상황은,
앞으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대법원에
양형기준의 개선을 적극 요청해 왔습니다.

다행히 지난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기술유출범죄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정말로 반가운 일입니다.

내년 3월 최종 결정에서
기술유출 심각성에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정부의 수사강화 노력]

또한 정부는 올 해
기술유출 수사 강화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1월에
'범부처 기술유출 합동대응단'이 출범하여
수사 기관들과 정책 부처들이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핵심 기구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 최초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 대통령실 주도로 산업부, 국정원, 법무부, 대검찰청, 과기부 등 10개부처 참여
3개 분과 : 정책/제도(산업부), 국제공조(법무부), 법집행(대검)으로 구성

이를 통하여
제도나 수사 역량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화될 수 있는
산업기술 보호의
새로운 변곡점이 된 해를 만들었다고 평가합니다.

[금번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안건 중요성]

오늘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추진 동향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기술수출 사안들을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첨단 반도체 해외공장 설립,
자동차 분야 공동 기술개발,
그리고 의약품 수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우리의 핵심 산업과 기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2024 산업기술보호 정책방향]

정부는 내년을
우리 기술보호 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반기에는
'무역기술안보 전략'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기술패권 경쟁에서
전반적인 기술안보 체계를 점검하고
첨단기술 보호와 확보를 병행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하반기에는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

공허한 구호나 탁상 행정을 지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연초부터 긴밀히 소통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산업기술보호는
정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민-관이 합심하여
기술안보라는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어야 합니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노력들을 담아내는
핵심 논의체이며,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앞으로도 기술보호를 위해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제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산업기술보호관련 위원회 현황**

1 산업기술보호위원회 ※ (근거)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 (**기능**)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해외M&A 등 심의·의결

○ (**구성**) **산업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 차관급[1], 민간전문가[2] 등 **25인**

1)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및 특허청장, 국가정보원장 지명자(14명)

2) 위촉직 위원(10명) : 임기2년('22.3.15~'24.3.14)

○ (**심의절차**) 분야별 전문위원회 사전심의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

○ (**운영실적**) '23.11월 기준, **총 6회 개최** 41건의 **안건 처리**(의결41, 보고5)

<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안건 처리 현황>

구분	수출승인	수출 불승인	M&A 승인	제도개선 등	계
'22년	8	1	1	3	13
'23.11월	41	-	-	5	46

* '22년 총 3회 개최, 안건 처리 총 13건(의결12, 보고1)

2 산업기술보호 전문위원회 ※ (근거) 산업기술보호법 제7조 제5항

○ (**기능**)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국가핵심기술(국가첨단전략기술)의 판정, 수출·해외M&A 등에 대한 기술검토 및 보호위 안건 사전검토

○ (**구성**) **분야별로 15인 이내**의 **민간·정부위원**(**임기 2년**, '21.11.20~'23.11.19)으로 구성되며, **산업부 장관**(**산업기술보호위원장**)이 **위촉·임명**

* (민간위원) 분야별 기업임원·교수·PD 등 기술보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위촉
(정부위원) 분야별 업종과 및 정보수사기관의 4급·4급 상당 공무원 임명

○ (**운영실적**) '23.11월 기준, **총 75회 개최 287건의 안건** 검토

< 분야별 전문위원회 개최 실적 >

구분	생명공학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반도체	정보통신	조선	디스플레이	기타	계
'22년	13	11	11	10	6	5	3	10	69
'23.11월	10	11	13	12	5	6	6	12	75

* '22년 총 69회 개최, 169건의 안건 검토